



2025-09-15

(25-5662)

페이지: 1/2

무역기술장벽위원회

원문: 스페인어

## 통보

본 통보문은 10.6 조항에 따라 회람한다.

1. 통보국가: 칠레

해당되는 경우, 관련 지방정부의 명칭(제 3.2 조 및 제 7.2 조):

2. 담당기관:

교통통신부(MTT)

3. 근거 조항 제 2.9.2 조 [X], 제 2.10.1 조 [ ], 제 5.6.2 조 [ ], 제 5.7.1 조 [ ], 제 3.2 조 [ ], 제 7.2 조 [ ], 기타:

4. 해당 제품(HS 코드 또는 국가 관세 분류 번호. 해당되는 경우 ICS 번호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음): 전기 모터 장착 자전거, 자전거용 헬멧

5. 통보 문서의 세부 사항(제목, 페이지 수, 접근 방법): 2019년 교통통신부 최고령 제 102 호 개정안 ([bcn.cl/leychile/navegar?i=1162453](https://bcn.cl/leychile/navegar?i=1162453)); (5 페이지, 스페인어)

요청 시 사본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당국의 통보 문서 및/또는 연락처 링크:

[https://members.wto.org/crnattachments/2025/TBT/CHL/25\\_05955\\_00\\_s.pdf](https://members.wto.org/crnattachments/2025/TBT/CHL/25_05955_00_s.pdf)

<https://www.subtrans.gob.cl/consulta-modificacions102/>.

6. 내용: 교통통신부는 2019년 교통통신부 최고령 제 102 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.

1. 보조 전기 모터 장착 자전거 및 해당 배터리에 대한 새로운 인증을 도입한다.
2. 국제표준의 효력을 규정한다.
3. 스포츠용 및 전기 차량용 헬멧에 대한 새로운 인증 대안을 포함시킨다.

7. 목적 및 근거(해당되는 경우 긴급한 문제의 성격 포함): 전기 자전거에 적용되는 안전 기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기 안전에 관한 현행 규정을 국제적 요구사항에 맞춰 조정할 필요가 있다. 따라서 2019년 교통통신부 최고령 제 102 호를 개정해야 한다. 인간의 건강이나 안전 보호.

**8. 관련 문서:**

- 교통법의 통합, 조정 및 체계화된 전문을 포함하는 2007년 법률 효력을 갖는 교통통신부 및 법무부 법령 제1호의 제2조 (<https://bcn.cl/3lbdq>).
- 2019년 교통통신부 교통차관실 명령 제102호 (<https://bcn.cl/2rj4s>).

**9. 채택 예정일:** 추후 결정

시행 예정일: 추후 결정

**10. 의견 제공**

의견 마감일: 2025-11-14

통보일로부터 60일 [X]

해당 통보와 관련한 의견을 처리하도록 지정된 기관 또는 당국의 연락처:

국제경제관계사무국(SUBREI)

무역규제과

전화: +(56 2) 2827 5251

이메일: [tbt\\_chile@subrei.gob.cl](mailto:tbt_chile@subrei.gob.cl).